

# I.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코기토』(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편집간행,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은 인문학 및 그 인접학문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학자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 ④ 편집위원은 제②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운데에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18인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소장이 임명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 시 이메일을 통한 회의도 열 수 있다.

## 제3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②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편집 및 인쇄
- ③ 비평논문, 서평, 학계동향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및 심사
- ④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 제4조 (심사위원 위촉)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5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항목을 근거로,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A,A,A: 게재          A,A,B: 게재

A,B,B: 수정 후 게재	B,B,B: 수정 후 게재
A,A,C: 수정 후 게재	A,B,C: 수정 후 재심사
B,B,C: 수정 후 재심사	A,C,C: 수정 후 재심사
B,C,C: 게재불가	C,C,C: 게재불가
A,A,D: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A,B,D: 게재불가	A,C,D: 게재불가
A,D,D: 게재불가	

④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투고 마감일자까지 투고자가 다시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심사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6조(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7조(간행 회수 및 일자)** ‘학술지’는 매년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간행한다.

**제8조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 논문투고와 원고작성은 각각 『코기토』 투고규정 및 『코기토』 원고작성규정을 따른다.

**제9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재, 번역 등은 먼저 본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6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II. 투고 및 원고작성규정

### 1. 투고자격 및 저자정보 표기

- ① 논문의 투고자격은 인문학과 그 인접분야 연구자들로 한다.
- ② 투고 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 주저자 및 모든 공저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저자정보를 한국연구자정보(KRI: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와 연동할 것을 권장한다.
- ③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과 게재 논문에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표기 방법은 이하 표 참조)

####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00대학/학생(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00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2. 논문 투고 방법

- ① 『코기토』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cogito.jams.or.kr>)에 가입한 후 별도의 승인 없이 제출절차에 따라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온라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연구윤리서약’에 투고자 및 모든 공동저자가 동의해야 한다.
- ③ 심사용 원고는 한글2002 이상으로 『코기토』 원고작성세부규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일괄 삭제해야 한다.
- ④ 온라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혹은 이에 상응하는 표절검사프로그램 결과표)를 첨부해야 한다.

3. 일반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초록, 도표를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출판된 『코기토』 기준 2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비평논문은 원고지 70~80매(『코기토』 기준 10매 내외) 분량, 서평 및 학계동향 등은 원고지 30~50매(『코기토』 기준 6매 내외) 분량으로 정한다. 분량 초과 시 편집규정 양식을 기준으로 초과된 1쪽당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투고자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 분량은 최대 원고지 200매(『코기토』 기준 30매)를 넘지 못한다.

4.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기타사항은 본 학술지의 양식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의 체계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로 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초록이 있다면, 영문초록 앞에 배치한다. 각 주제어는 가능하면 한 단어로 구성한다.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외국어초록은 250단어 가량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6.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제1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 명기하고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적고 공동저자도 소속을 밝힌다.

7. 원고작성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장의 번호는1., 2., 3. 등으로 하고 절의 번호는1.1., 2.1., 3.1. 등으로 하며 절 아래는1.1.1., 2.1.1., 3.1.1.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현재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원문을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 속의 간략한 인용문장은 “ ” 를 붙이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며, 인용 또는 강조된 단어에 대해서는 ‘ ’ 를 붙인다.

③각주번호는 1), 2), 3)으로 표기하며, 각주번호와 각주내용은 한 칸 띄우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1) 저서: 저자이름, 『책이름』(서양서: 이탤릭체)(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다만 간행지역은 생략할 수 있다)

예1) 홍길동, 『춘향전연구』(서울, 남원출판사, 1998), 287.

예2) Liamou P. Unwin, *Calm in Japan* (Boston : Stronghope Press, 1986), 23 ~ 24.

2) 편저와 편저 속의 논문은 각 경우에 따라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예1) 위르겐 솔름봄 편, 백승종 외 옮김, 『미시사와 거시사』(서울, 궁리, 2001).

예2) 조반니 레비, 「근대국가의 기원과 미시사적 관점」, 『미시사와 거시사』(서울, 궁리, 2001), 83 ~ 125.

예3) David M. Halperin, et al., eds., *Before Sexuali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2.

예4) Ann Ellis Hanson, “The Medical Writers’ Woman” in *Before Sexuality*, eds., David M. Halperin, et a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09 ~ 338.

3) 번역서: 저자명, 역자명, 『역서이름』(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1) N. 프라이,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서울, 한길사, 1982), 330.

4) 논문: 필자이름, 「논문이름」(서양서: “ ” 표시), 『학술지이름』(서양서: 이탤릭체)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수.

예1) 홍길동, 「춘향전의 사실 구성 원리」, 『한국민족문화』9권(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23 ~ 125.

예2) 성춘향, 「광한루단상」, 『한국의 문화유산』(부산대출판부, 1998), 235.

예3) Robert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 (1985), 639.

5) 신문: 『신문이름』, 발행 년 월 일.

예) 『釜山일보』, 1998.03.25.

6)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책명 혹은 논문명은 간략히 표기하고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예1) 홍길동, 『고려후기간화선연구』, 27.

예2) Lefebvre, *Espace et politique*, 155.

7) 여러 논문이나 저서를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이때 세미콜론은 앞 문장에 붙인다.

예)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서울, 휴머니스트, 2005), 187 ~ 191; 이종찬, 『동아시아 이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72 ~ 201.

8) 漢籍고서의 경우 다음의 예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예1) 『論語』 卷1, 學而.

예2) 『英祖實錄』 卷51, 英祖16年6月壬申(3日).

예3)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예4) 一然, 『三國遺事』(瑞文文化社, 1996), 132.

9)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news.joins.com/nknet.html> (검색일: 2006.03.13)

④참고문헌은 한국서, 동양서, 서양서, 기타의 차례로 배열하되, 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가나다 순, 혹은 abc 순으로 한다. 같은 이름의 필자일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한다.

예1) 홍길동, 『춘향전연구』(서울, 남원출판사, 1998).

예2) 주광순, 「존재론의 역사적 고찰」, 『코기토』 62호(부산대인문학연구소, 2007), 123 ~ 125.

예3) Unwin, Liamou P., *Calm in Japan* (Boston : Stronghope Press, 1986).

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학술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8. 필자에게는 논문집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9. 원고모집 최종기한은 매년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로 한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모집 최종기한과 이에 따른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0. 연도에 상관없이 (주저자와 공저자 모두를 포함한) 투고자는 『코기토』에 2회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11. 『코기토』 86호(2018.10)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논문은 게재료 30만원, 연구비를 수령하지 않은 일반논문의 경우, 전임 연구자는 게재료 15만원을, 비전임 연구자는 게재료 5만원을 부담한다.

12. 논문심사비는 6만원이며, 조판면수 25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쪽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심사비를 면제한다.

13.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저작권이 『코기토』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저작권 이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cogito.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14.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투고 시 연락처(유무선, 이메일 주소 포함)와 소속(영문명 포함), 직위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논문 투고 연락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내 『코기토』 편집위원회  
전화: 051) 510-1669  
팩스: 051) 515-1956  
이메일: [cogito@pusan.ac.kr](mailto:cogito@pusan.ac.kr)